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후단을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 폐지하려는 자는 해당 액화석유가스 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 마다

제6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본문 중 “연소기”를 “연소기,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및 다기능보일러”로 한다.

제7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④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법 제44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인 자(자동절체기를 사용하여 용기를 집합하는 경우에는 500킬로그램으로 한다)

가.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하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나. 제70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

다.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제72조의4제2항 본문 중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을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24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72조의10 본문 중 “굴착공사”를 “제72조의4제3항·제5항, 제72조의5, 제72조의6 및 제72조의9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굴착공사”로 한다.

별표 3 제13호를 삭제한다.

별표 4의2 제2호나목에 4)를 신설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에 5)를 신설한다.

4) 수리·청소 및 철거 기준

정압기 가스시설 중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를 수리·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 후에는 설비의 작동성 확인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수리·청소 및 철거 기준

제조소 밖의 배관 중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를 수리·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 후에는 설비의 작동성 확인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별표 7 제4호 중 파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5호나목 중 6)를 7)로 하며, 같은 목에 6)를 신설한다.

6) 시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연소기로서 제2호의 기술기준에 따른 상세기준을 적용해서는 시험 또는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연소기

별표 15 제3호가목1) 본문 중 “마감조치”를 “막음조치”로 한다.

별표 18 제2호 본문 중 “연소기·연료전지”를 “연소기”로 한다.

별표 20 제1호가목4)라)(3) 본문 중 “마감조치”를 “막음조치”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다목3), 제2호다목3) 및 제3호다목3) 본문 중 “오피스텔”을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로 한다.

별표 23 제1호나목2)의 적용범위란에 “받은 중”을 “받은 자 중”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등급	사고의 원인이 된 부적합 사항 및 권장사용기간 경과제품 사용	할증률
A	1) 호스를 “I” 형으로 연결하여 사용한 경우 2) 호스를 호스밴드로 단단히 접속하지 않은 경우 3) 연소기의 배기통이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닌 경우 4) 권장사용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한 경우	20%
B	1) 배관 및 호스 이음부의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2) 연소기마다 퓨즈콕, 상자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3) 검사를 받지 않은 가스용품을 사용한 경우	42%
C	1) 충전용기를 옥외나 용기보관실에 보관하지 않은 경우 2) 막음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전용보일러실에 보일러(밀폐식 보일러 또는 옥외에 설치한 보일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4) 보일러나 온수기를 목욕탕이나 화장실에 설치한 경우 5)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와 배기통, 배기통과 배기통 이탈된 경우 6)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70%
D	별표 13 제3호가목5)에 소비설비 안전점검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122%
E	1) 가스가 누출되고 있으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

별지 제18호서식에 첨부서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사업자등안내사항을 신설한다.

첨부서류	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 폐지 시에는 저장설비 등의 액화석유가스 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사업자등 안내사항	※ 사업이나 저장소 사용을 중단(휴지)하는 경우 : 사업자나 저장자는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설비 내의 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등을 통해 안전하게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관리자 1인 이상을 상주시켜 가스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저장량을 최소화 하고 불특정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6호서식 표 하단에 제3호를 신설한다.

3.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마다 점검해야 하며 수시점검란에 기록함
별지 제27호서식 제2호가목 본문 중 “마감조치”를 “막음조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개시 등의 신고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업이나 저장소 사용 폐지신고를 하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사업개시 등의 신고) 법 제 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단·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개시·중단·폐지 또는 재개 전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시·중단·폐지·재개 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제18조(사업개시 등의 신고) ----- ----- ----- ----- ----- ----- ----- ----- ----- <u>이 경우 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 폐지하려는 자는 해당 액화석유가스 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u>
제42조(가스공급자의 의무)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가스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30조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해야 한다. 1. (생략) 2. 수요자(가스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	제42조(가스공급자의 의무) ①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소기의 제조자가 가스용품의 성능을 변경하는 경우
2.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를 변경함에 따라 연소기의 열량을 변경하는 경우
3. 업무용 대형연소기의 점화봉 이탈 시 막음조치 등 연소기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경우

제71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검사) ① ~ ③ (생략)

④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법 제44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매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2. 제1호 외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⑤ · ⑥ (생략)

-----.

1. 연소기,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및 다기능보일러-----
2. -----
----- 연소기,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및 다기능보일러-----

3. -----
----- 연소기,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및 다기능보일러-----

제71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법 제44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44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1. (생 략)

2. 제70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
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자

가.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
터 미만인 자

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자동
절체기를 사용하여 용기를 집
합하는 경우에는 500킬로그램
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미만인자

3.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저장
능력이 250킬로그램 미만인 자

⑧ ~ ⑬ (생 략)

제72조의4(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
보하려는 자가 「도로법」 제61
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허가관청이 굴착계
획에 관한 정보를 정보지원센터

⑦ -----

-----.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로서 저장능력 250킬
로그램 미만인 자(자동절체기를
사용하여 용기를 집합하는 경
우에는 500킬로그램으로 한다)

가.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
하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
용하려는 자

나. 제70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
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

다.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에 해당하는 자

<삭 제>

⑧ ~ ⑬ (현행과 같음)

제72조의4(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굴착계획에

에 제공한 경우에는 굴착공사자가 굴착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③ ~ ⑦ (생략)

제72조의10(긴급 굴착공사 등) 굴착공사자가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이하 “긴급굴착공사”라 한다) 또는 급수(給水)를 위한 길이 10미터 이하·너비 3미터 이하의 굴착공사(이하 “소규모급수공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 현장에서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공동으로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매설상황을 협의하고 안전점검원의 참관 아래 굴착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별표 3]

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

1. ~ 12. (생략)

13. 연료전지[가스소비량이 232.6 kW(20만 kcal/h)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한 정보를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24시간 전까지 -----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72조의10(긴급 굴착공사 등) ----

제72조의4제3항·제5항, 제72조의5, 제72조의6 및 제72조의9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굴착공사-----

-----.

[별표 3]

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

1. ~ 12. (현행과 같음)

<삭제>

14. (생 략)

[별표 4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기술·시공감리·검사·정밀안전
진단·안전성평가 기준

1. (생 략)

2. 정압기

가. (생 략)

나. 기술기준

1) ~ 3) (생 략)

<신 설>

다. (생 략)

3. 제조소의 밖의 배관

가. (생 략)

나. 기술기준

1) ~ 4) (생 략)

<신 설>

14. (현행과 같음)

[별표 4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기술·시공감리·검사·정밀안전
진단·안전성평가 기준

1. (현행과 같음)

2. 정압기

가. (현행과 같음)

나. 기술기준

1) ~ 3) (현행과 같음)

4) 수리·청소 및 철거 기준

정압기 가스시설 중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를 수리·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 후에는 설비의 작동성 확인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현행과 같음)

3. 제조소의 밖의 배관

가. (현행과 같음)

나. 기술기준

1) ~ 4) (현행과 같음)

5) 수리·청소 및 철거 기준

제조소 밖의 배관 중 액화석유

다. · 라. (생략)

[별표 7]

가스용품 및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1. ~ 3. (생략)

4. 가스용품의 종류

별표 3에 따른 허가대상 가스용
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 다. (생략)

파. 연료전지[가스소비량이 232.6
kW(20만 kcal/h) 이하인 것을 말
한다]

하. (생략)

5. 그 밖의 사항

가. (생략)

나. 가스용품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별표 3에 따른 허가대상
가스용품에서 제외한다.

1) ~ 5) (생략)

가스가 통하는 설비를 수리·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
하고, 작업 후에는 설비의 작동성
확인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 라. (현행과 같음)

[별표 7]

가스용품 및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1. ~ 3. (현행과 같음)

4. 가스용품의 종류

-----.

가. ~ 다. (현행과 같음)

<삭 제>

하.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사항

가. (현행과 같음)

나. -----

-----.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생 략)

다. · 라. (생 략)

[별표 15]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

1. · 2. (생 략)

3. 점검기준

가. 용기가스소비자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자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 수요자의 가스사용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1) 가스계량기(중량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는 용기를 말한다) 출구에서 배관·호스 및 연
소기에 이르는 각 접속부의 가스누출 여부와
마감조치 여부

2) ~ 11) (생 략)

나. · 다. (생 략)

[별표 18]

가스용품의 합격표시

6) 시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
용되는 연소기로서 제2호의 기
술기준에 따른 상세기준을 적용
해서는 시험 또는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연소기

7) (현행 6)과 같음)

다. · 라. (현행과 같음)

[별표 15]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

1. · 2. (현행과 같음)

3. 점검기준

가. -----

1) -----

----- 막음조치 -----

2) ~ 11) (현행과 같음)

나. · 다. (현행과 같음)

[별표 18]

가스용품의 합격표시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이하 “KC마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각인하거나 검사증명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용품이 일관공정으로 제조되는 경우에는 제조공정 중에 그 합격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압력조정기·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콕·전기절연이음관·전기용착폴리에틸렌이음관·이형질이음관·신속 커플러는 가목의 검사증명서, 강제혼합식가스버너·연소기·연료전지·다기능보일러는 나목의 검사증명서, 고압호스·염화비닐호스·금속유연호스는 다목의 검사증명서를 각각 부착한다. 또한, 복수인증제품으로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3에 따라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는 KC마크의 높이와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
- 가. ~ 다. (생략)

[별표 20]

[illegible]

1. (현행과 같음)
2. -----

연소기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별표 20]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1. 용기에 의한 사용시설

가. 시설기준

1) ~ 3) (생략)

4) 배관설비기준

가) ~ 다) (생략)

라) 배관은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성과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며, 다음의 기준에도 적합하게 할 것

(1) · (2) (생략)

(3) 배관의 맨 끝 부분에는 만감조치를 할 것

마) (생략)

5) ~ 9) (생략)

나. (생략)

다. 검사기준

1) · 2) (생략)

3)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1. 용기에 의한 사용시설

가. 시설기준

1) ~ 3) (현행과 같음)

4) 배관설비기준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1) · (2) (현행과 같음)

(3) ----- 만감조치-----

마) (현행과 같음)

5) ~ 9)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검사기준

1) · 2) (현행과 같음)

3) -----

(공동저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콘도미니엄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 완성검사 범위는 저장설비로부터 연소기까지로 하고, 정기검사 범위는 저장설비로부터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로 한다.

4) · 5) (생략)

2.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사용시설
가. · 나. (생략)

다. 검사기준

1) · 2) (생략)

3)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저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콘도미니엄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 완성검사 범위는 저장설비로부터 연소기까지로 하고, 정기검사 범위는 저장설비로부터 가

-----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

4) · 5) (현행과 같음)

2.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사용시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검사기준

1) · 2) (현행과 같음)

3) -----

-----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

[illegible]

4) · 5) (현행과 같음)

3. 저장탱크에 의한 사용시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검사기준

1) · 2) (현행과 같음)

[illegible]

4) · 5) (현행과 같음)

4. · 5. (생 략)

[별표 23]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소비자보
방책임보험의 보험금액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
금액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기준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만, 지급보험금액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생 략)

나.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금액

보험금액	적용 범위
1) 1억원 이상	(생 략)
2) 3억원 이상	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의 허가를 받은 중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 (1) · (2) (생 략) 나) ~ 사) (생 략)
3) 10억원 이상	(생 략)

2. (생 략)

3. 보험료의 할인·할증 기준

가.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별표 23]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소비자보
방책임보험의 보험금액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
금액

-----,

-----.

가. (현행과 같음)

나. -----

보험금액	적용 범위
1) 1억원 이상	(현행과 같음)
2) 3억원 이상	가) ----- ----- 받은 자 중 ----- ----- (1) · (2) (현행과 같음) 나) ~ 사) (현행과 같음)
3) 10억원 이상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보험료의 할인·할증 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가스공급자가 제42조제1항제 2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별표 7에 따른 상세기준에서 정한 권장사용기간 경과제품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에서 가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등급별 할증률을 적용한다.

등급	사고의 원인이 된 부적합 사항 및 권장사용기간 경과제품 사용	할증률
A	1) · 2) (생략) 3) 연소기의 배기통 재료가 내식성 및 불연성이 아닌 경우 4) (생략)	20%
B	1) ~ 3) (생략)	42%
C	1) (생략) 2) 막음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전용보일러실에 보일러(밀폐식 보일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4) (생략) 5) 배기통이 막힌 경우 <신설>	70%
D	(생략)	122%
E	1) · 2) (생략)	200%

비고 (생략)
다. ~ 바. (생략)

나. -----

-----.

등급	사고의 원인이 된 부적합 사항 및 권장사용기간 경과제품 사용	할증률
A	1) · 2) (현행과 같음) 3) 연소기의 배기통이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닌 경우 4) (현행과 같음)	---
B	1) ~ 3) (현행과 같음)	---
C	1) (현행과 같음) 2) 막음조치----- 3) 전용보일러실에 보일러(밀폐식 보일러 또는 옥외에 설치한 보일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4) (현행과 같음) 5)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와 배기통, 배기통과 배기통 이탈된 경우 6)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D	(현행과 같음)	----
E	1) · 2) (현행과 같음)	----

비고 (현행과 같음)
다. ~ 바. (현행과 같음)

[] 개시
[] 중단
[] 폐지
[] 재개

사업, 저장소 사용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 포함),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및 저장소의 경우 그 사업이나 저장소 사용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개 신고 전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인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신청 세부 내용	허가사항	허가나 등록의 종류:	
		허가나 등록 번호:	허가나 등록 연월일:
	개시 · 중단 · 폐지 · 재개 연월일		
	사 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 · []중단 · []폐지 · []재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 · 군수 · 구청장

첨부서류	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 폐지 시에는 저장설비 등의 액화석유가스 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사업자등 안내사항	※ 사업이나 저장소 사용을 중단(휴지)하는 경우: 사업자나 저장자는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설비 내의 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등을 통해 안전하게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관리자 1인 이상을 상주시켜 가스시설을 유지 · 관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저장량을 최소화 하고 불특정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실행대장

[illegible]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점검연월일: 년 월 일

1. 시설현황

배관	강관	A, m	동관	A, m	호스	m	그 밖의 사항()	A, m
중간밸브	볼밸브	개	퓨즈콕	개	호스콕	개	그 밖의 사항()	개
그 밖의 사항								
연소기	레인지	2구 레인지	개	3구 레인지	개	오븐레인지	개	그 밖의 사항()
	보일러	형식	FF,FE,CF	위치	옥내, 옥외, 전용	가스소비량	kg/h	시공자
	온수기	형식	FF,FE,CF	위치	옥내, 옥외	가스소비량	kg/h	시공자
	그 밖의 사항							

2. 점검결과

구분		점검내용		판정
가스누출검사		가. 가스계량기 출구(중량판매의 경우 용기 출구)에서 배관, 호스 및 연소기에 이르는 각 접속부의 가스누출 여부와 막음조치 여부		적·부
가스 용품의 상태 점검	검사품	나. 가스용품의 한국가스안전공사 합격 표시 또는 한국산업표준(KS) 검사표시 유무		적·부
	중간밸브	다. 연소기마다 퓨즈콕·상자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장치 설치 여부		적·부
	호스	라. "T"형으로의 연결금지 준수 여부 및 호스밴드 접속 여부		적·부
	연소기	마. 목욕탕이나 화장실의 보일러·온수기 설치금지 규정 준수 여부		적·부
		바. 전용보일러실에 보일러(밀폐식 보일러 또는 옥외에 설치한 보일러는 제외)를 설치하였는지 여부		적·부
		사. 배기통이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		적·부
		아.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와 배기통, 배기통과 배기통 이탈 여부		적·부
그 밖의 사항		자. 용기의 옥내설치(보관) 여부		적·부
		차.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의 배관이 별표 20 제1호가목4)라)에 적합하게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 등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적·부
		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여부		적·부
		타. 그 밖에 가스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없는지 여부		적·부
가스용품의 권장사용기간		파. 압력조정기·고압호스·저압호스·퓨즈콕 및 가스보일러의 권장사용기간 경과 여부		적·부

개선통지사항	※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의 배관이 별표 20 제1호가목4)라)에 적합하게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택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배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	---

가스용품 교체 권장사항	
--------------	--

가스 공급자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점검자명: (서명 또는 인)	소비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개선기한 내에 시설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